



제 574호 2023. 9. 7(목)

입법예고

제2023-3796호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971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고 시

제2023-298호 김해도시계획시설(달개비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35979

공 고

제2023-3781호 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임호공원)사업 공사완료 공고 35983

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7일

김 해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2. 예고기간 : 2023. 9. 7. ~ 9. 27. (20일간)

3. 개정이유

-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대상 건수가 없어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으며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6.01.27.)으로 중앙부처 해당 위원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코자함.

4. 주요내용

- 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 -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 삭제
 -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5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**2023년 9월 27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(하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2)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

주소: (우)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하수과

(전화: 055-330-3966, 팩스: 055-722-4561, e메일: tokiw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e메일, 직접 방문 등

6. 기타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하수과 공공하수팀(☎ 055-330-39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※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찬·반 의견과 그 이유	비 고

○ 기타 참고사항 :

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월 일
제출자 : 김해시장

1. 제안이유

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대상 건수가 없어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으며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“2016.01.27.”)으로 중앙부처 해당 위원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코자함.

2. 주요내용

- 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 -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 삭제
 -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 및 제7조
 - 「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부터 제15조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- 부서협의
 - 규제심사(법무담당관) : 2023. 8. 25.
 - 부패영향분석(감사관) : 2023. 8. 29.
 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 : 2023. 8. 25.
- 입법예고 : 2023. 9. 7. ~ 2023. 9. 27. (20일간)
- 법제심사 : 2023. 10. .
- 조례·규칙심의회 : 2023. 10. .

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9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)</u> <u>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</u> <u>여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(이</u> <u>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2. <u>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</u> <u>가에 관한 사항</u> 3. <u>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</u> <u>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등의</u> <u>인센티브에 관한 사항</u> 4. <u>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</u> <u>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</u> <u>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0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</u> <u>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②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</u> <u>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·위촉하는</u> <u>자로 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</u> <u>하는 5급 이상 공무원</u> 2. <u>수질·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</u> <u>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,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
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
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해촉

<삭 제>

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
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
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
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
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
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
촉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

<삭 제>

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
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
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
한다.

제13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)

<삭 제>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
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
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록(회의의 일시, 장
소 및 심의내용)과 의결서를 작성·

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.

④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하수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,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겸한다.

제14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김해시 고시 제2023-298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달개비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김해도시계획시설(달개비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김해시 공원녹지과(055-350-637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9월 7일

김 해 시 장

1. 김해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어린이공원) 결정 조서

가. 근린공원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10	어린이 공원	어린이 공원	김해시 삼계동 1428-3	4,493.9	-	4,493.9	1996.12.13	일반 주거지역

2. 공원조성계획 총괄표

가. 총괄표 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공 원 면 적	4,493.9	-	4,493.9	
시 설 면 적 계	2,634.8	-	2,634.8	시설율 : 58.6%
건축 면적	바닥면적	28.74	감) 3.14	25.6
	연 면 적	28.74	감) 3.14	25.6

□ 변경사유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9	어린이 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면적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닥면적 28.74㎡ → 25.6㎡ 감) 3.14㎡ - 연 면 적 28.74㎡ → 25.6㎡ 감) 3.14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달개비공원 내 화장실 건축면적 반영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

나. 토지이용계획표

구 분	면 적 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총 계	4,493.9	-	4,493.9	
도로 및 광장	1,562.3	-	1,562.3	
휴 양 시 설	69.7	-	69.7	
유 희 시 설	920.8	-	920.8	
운 동 시 설	36.6	-	36.6	
편 익 시 설	45.4	-	45.4	
녹 지	1,859.1	-	1,859.1	

3. 세부시설조사

가. 도로 및 광장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건축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1,562.3	-	-	-	
기정	-	도 로	-	723.6	-	-	-	
기정	1	광 장1	-	543.9	-	-	-	
기정	2	광 장2	-	294.8	-	-	-	

나. 휴양시설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건축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69.7	-	-	-	
기정	3	휴게쉼터	-	69.7	-	-	-	

다. 유희시설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건축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920.8				
기정	4	어린이놀이터1	-	309.8	-	-	-	
기정	5	어린이놀이터2	-	611.0	-	-	-	

다. 운동시설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건축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36.6	-	-	-	
기정	6	지압로	-	36.6	-	-	-	

다. 편의시설 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건축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45.4	28.74	28.74	-	
변경				45.4	25.6	25.6	-	
기정	7	화장실	-	45.4	28.74	28.74	지상1층	
변경	7	화장실	-	45.4	25.6	25.6	지상1층	

라. 녹지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번호	시설의 종류	위 치	부지면적 (㎡)	시설규모(㎡)		규 모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기정	합 계			1,859.1	-	-	-	
기정	-	녹 지	-	1,859.1	-	-	-	

4. 세부도로조서 (변경없음)

가. 총괄표 (변경없음)

구 분		합 계		소 로		비 고
		연장(m)	면적(m ²)	연장(m)	면적(m ²)	
합 계	기 정	178.2	723.6	178.2	723.6	
1류	기 정	-	-	-	-	
2류	기 정	-	-	-	-	
3류	기 정	178.2	723.6	178.2	723.6	

나. 소로 (변경없음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(m)	면적(m ²)	기 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합 계				178.2	723.6	-	-	-	
기정	소로	3	1	5	30.7	164.1	진입로	북서측구역계	광장1	
기정	소로	3	2	4	3.8	16.2	진입로	북측구역계	광장1	
기정	소로	3	3	5	30.5	169.8	진입로	남동측구역계	광장1	
기정	소로	3	4	5	35.8	197.9	진입로	남서측구역계	광장1	
기정	소로	3	6	2	4.3	10.0	연결로	휴게시설	광장1	
기정	소로	3	7	3	35.6	109.9	연결로	광장1	소로3-4	
기정	소로	3	8	1.2	7.8	10.8	연결로	소로3-4	소로3-7	
기정	소로	3	9	2	29.7	44.9	연결로	광장2	광장2	

3. 관계도면 : 실음생략

김해시 공고 제2023 - 3781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임호공원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임호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7일

김 해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김해시 외동 산6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김해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임호공원) 사업
- 사업의 명칭 : 임호공원 조성사업
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도시계획결정(㎡)	금회 시행규모(㎡)	비고
근린공원 (임호공원)	168,660㎡	21,141㎡	최초결정일 1986.10.10.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김해시장(공원녹지과장)
- 주소 :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

5. 사업기간 : 2017. 06. 23. ~ 2023. 12. 31.

6. 준 공 일 : 2021. 5. 7.

7. 문 의 처 : 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055-330-3596) 및 공원녹지과(☎055-350-6373)